

제 2 장 초상권 침해 사례

❶ 사 례 18

수업시간에 질문하기를 싫어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01 손배청구
신 청 인 홍○○
피신청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TV)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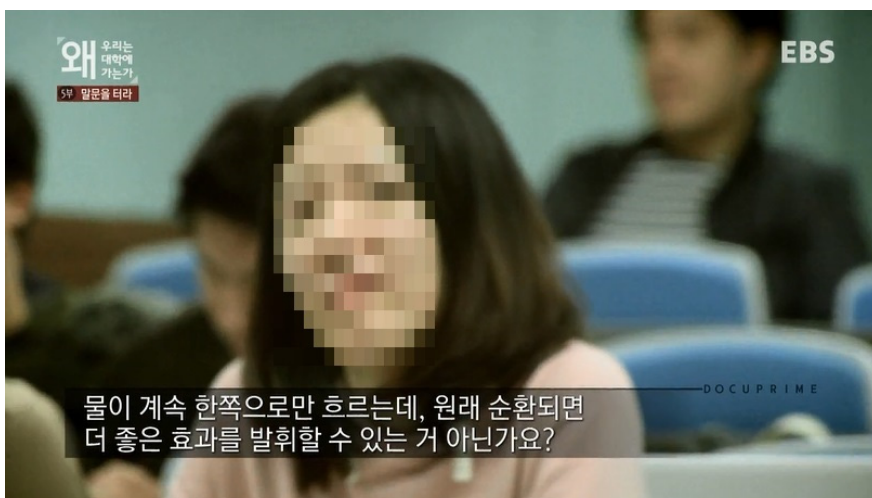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며 오히려 싫어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수업시간에 섭외한 학생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뒤 주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학생인 신청인의 초상을 클로즈업하여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본인의 초상을 촬영하고, 클로즈업하여 보도함으로써 질문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대학생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며, 모자이크되지 않은 신청인 얼굴이 나온 방송 캡처화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3,000,000원 지급 및 유감표명 외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된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를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EBS-TV -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5부』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21:50)
- 내 용 - (전략)

- ▷ 나레이터 : 다시 우리들의 대학입니다. 딱히 물을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없는 우리 강의실. 만약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을 도와줄 평범한 대학생 ○○씨입니다.
- 오늘 질문 다섯 번 수업시간에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 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씨의 임무죠. 긴장되는지 눈치를 보네요.
- 백 명이 넘는 대형 강의. 역시나 말을 하는 사람은 교수뿐입니다.
- 수업이 지루해 질 때쯤
- ▷ ○○씨 :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류도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 ▷ 나레이터 : 무심한 표정. 학생들은 질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수는 성의껏 답을 주는데요.
- ▷ ○○씨 :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물이 염분이 더 높은 건가요?
- ▷ 나레이터 : 좀처럼 익숙치 않은 상황. 살짝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 됩니다
- ▷ ○○씨 :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물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는데, 원래 순환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 ○○씨 :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 나레이터 : 웬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 ▷ ○○씨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 ▷ 교수 : 예 하세요.
- ▷ ○○씨 : 교수님은 그럼 바다에 자주 가세요?

- ▷ 교수 : 아 제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바다를 매일 보고.
- ▷ 나레이터 : 뭔가 불편합니다.
- ▷ 교수 : 나 이제 갈 건데 수업 끝나고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없어요?
- ▷ 나레이터 : 끝났습니다. 질문한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 ▷ 학생 : 황당함 황당했는데 저는
- ▷ 학생 : 나댄다.
- ▷ 나레이터 : 질문을 부탁한 친구거든요.
- ▷ 교수 :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래 수업시간에 질문을 안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질문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시킨 줄 알았어요.
- ▷ ○○씨 : 저 같은 경우 저학년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업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웬만하면 질문을 자제하는 편이었고요.
- ▷ ○○씨 : 일단 어색했어요.
- ▷ ○○씨 :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따갑기도 하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한 후 신청인이 마치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은 대학생인 것처럼 클로즈업하여 보도하여, 신청인의 초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년 3월 3일(월)까지 총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는 즉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당 게시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사례 19

한국인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335, 2014서울조정336(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iMBC)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인 남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한 네팔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등산장비를 갖추고 네팔에 입국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5초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업무상 네팔을 방문했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정 성매매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2,000,000원 지급 및 홈페이지 다시보기 상의 모자이크 처리를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추악한 ‘해외 미성년 성매매’ 현장지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12일자, iMBC 1월 12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 나레이터 : 아동 성매매. 어린 여성들을 찾아 동남아 국가들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까지 한국 관광객들의 성매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필리핀의 한 유흥도시에서는 현지 10대 여성들이 어지간한 한국어는 다 할 정도로 한국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인데도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국 관광객들의 추악한 자화상, 현지 취재했다. <중략>
- ▷ 기자 : 이처럼 사법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일부 관광객들의 추태는 동남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말라야 산맥으로 잘 알려진 남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네팔, 국민 1인당 한해 소득이 불과 600달러 남짓,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등산 열풍과 함께 국적항공사의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네팔을 찾는 한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 ▷ 네팔 현지 여행사 대표 : 2007년도 열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 더블됐어요.
- ▷ 기자 :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관광일번지로 통하는 타멜거리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치지만 어둠이 깔리면 쾌락을 좇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은밀한 유혹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네팔의 어린 소녀들을 찾는 한국인 남성들이 이곳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4년 4월 30일로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은 MBC-TV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 내용 중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4월 21일까지 모자이크 처리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사 례 20

리조트 붕괴현장 보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376, 2014서울조정378, 2014서울조정380, 2014서울조정680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선일보,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서울신문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8. (2014서울조정376, 378, 380) 2014. 05. 16. (2014서울조정680)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뉴스를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잔해물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된 재난현장 사진으로, 사고 직후부터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더하여 정신적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각 30,000,000원 및 서울신문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조선일보는 재난현장 보도의 경우 현장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 관행인데다 신청인의 심리적 충격은 보도사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난 그 자체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중재부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타 매체와의 형평성 및 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나머지 매체의 경우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해 한겨레 및 서울신문 각 2,000,000원, 연합뉴스 2,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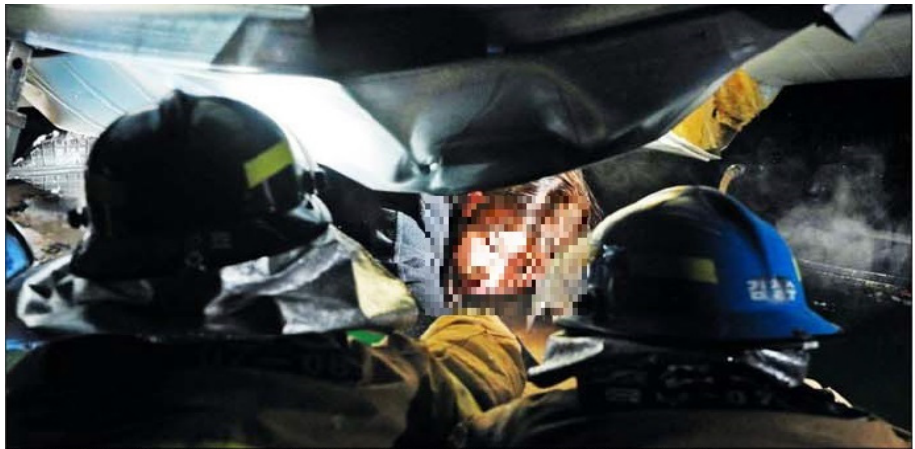
- 한겨레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살려주세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니오션리조트 강당이 무너지는 시도가 발생한 17일 밤 구조물에 깔린 한 학생이 구조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2

- 조선일보 - 『조금만 버텨 ... 숨막히는 구조』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조금만 버텨... 숨막히는 구조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니오션리조트 강당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매몰돼 있던 여학생을 끌어내고 있다

조정대상보도3

- 연합뉴스 - 『마우나 리조트 붕괴 관련』 기사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포토면)
- 내 용



[경주=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리조트 붕괴로 깔린 여학생이 구조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여고생은 구조됐다. 2014.2.17

조정대상보도4

- 서울신문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 내 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양남면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로 부상했다 학생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3시간에 걸친 화재 피해 현장에 깔린 여고생이 고통에 잠긴 얼굴로 구조를 호소하고 있다. 이 여고생은 출원한 경주소방서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서울신문)

사건처리결과

1. 조정성립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신문)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일보)

조정성립사항 1-한겨레

1. 보도문

가. 제목 :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나. 본문 : 한겨레는 2014년 2월 18일자 지면 및 2월 17일자 인터넷 한겨레에 「경주 리조트 붕괴 대학생 100여명 깔려...9명 사망」 제하의 기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 학생의 사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4월 23일(수)(토요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보도한다. 제목은 통상의 정정보도문 제목 크기로 하되 2단으로 편집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3일(수)(토요일 제외)까지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도 게재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30일(수)까지 총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한겨레 -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성립사항 2-연합뉴스

1.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3일(수)까지 피신청인 지방국장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2014년 2월 17일)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4월 30일(수)까지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

조정성립사항 3-서울신문

1. 피신청인은 2014년 6월 11일(수)까지 피신청인 대리인(남○○ 사진부장)이 신청인에게 핸드폰 (010-○○○○-○○○○)으로 전화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사진(2014년 2월 18일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6월 11일(수)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5.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조선일보**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닷컴(www.chosun.com)에 게재된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사진에 대하여 신청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신청인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별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4. 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사 례 21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여행상품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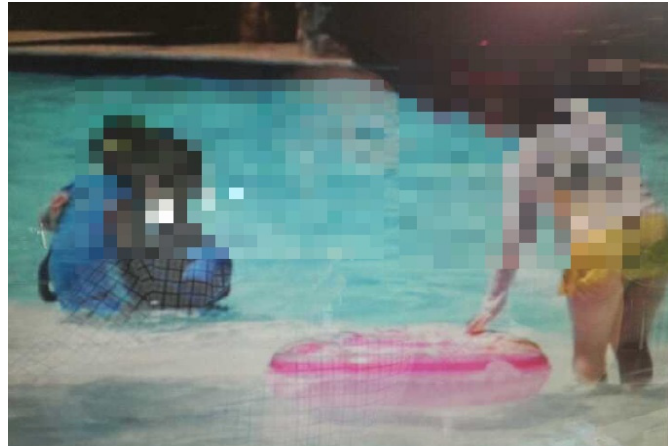
사 건	2014서울조정1120 손배청구
신 청 인	황○○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홈&쇼핑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방송을 통해 필리핀 세부의 한 리조트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다정하게 물놀이하고 있는 신청인 가족의 모습을 3초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년 전 가족과 함께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동의 없이 찍고, 또 2년간 6차례에 걸쳐 홈쇼핑 상품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 측이 심리 전 신청인 측에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홈앤쇼핑 - 『필리핀 세부 리조트 여행 상품』 소개 방송 (2014년 7월 5일자)
- 내 용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 사례 22

신청인이 유병언의 친동생과 의형제라고 허위보고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31 손배청구
신 청 인	조○○
피신청인	주식회사 스타엔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찰이 구원파 유병언의 동생인 유병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유병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의형제 사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친과 친분관계에 있었던 유병호가 부친 사망 후 신청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기거한 것으로 구원파와는 무관한데도 마치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이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일부가 인정되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한편,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한경닷컴, 티비리포트, 전자신문 인터넷, 아시아경제 닷컴에 대해서도 중재부가 각 2,500,000원, 1,8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스타엔 - 『조○○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스타엔)

- **내 용** - 유병언의 동생인 유병호 씨가 조○○의 아들 조○○ 씨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검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을 급습해 현장에서 유병호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유병호 씨는 ‘아시아의 ○○’로 불린 ○○선수 고(故) 조○○의 아들 조○○ 씨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씨는 유병호 씨의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검찰 역시 조○○ 씨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호 씨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컨설팅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 씨 일가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의 아들 조○○ 씨는 지난 2010년 ○○○ ‘놀라운 ○○ ○○○’을 통해 감람에 성공하며 얼굴을 알렸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4년 6월 23일자 스타섹션 「조○○ 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0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

❖ 사 례 23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에 적극 가담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 특정 모임을 이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40·1441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국제뉴스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병언 도피를 돕고 있는 측근들을 보도하면서 ‘김엄마’로 알려진 신청인의 초상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고, 못생긴 외모를 지녔으며, 유병언의 맹종도피자로, 개인 따까리로 생활 하면서 ○○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병언의 도피를 돕거나 ○○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진과 성명을 공개해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비춰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으나,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측의 보도내용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과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 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자 신청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의 보도를 그대로 전제한 DK뉴스, 부패방지뉴스에 대해서도 중재부가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으로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국제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유병언 도피도우미 여러 명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측근 내연녀는 바로 양모(40)씨로 주치 간호사다. 이외에도 유○○(52), 박○○(51)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자는 바로 김엄마로 알려진 못생긴 외모의 김○○(59)이다.

이미 김엄마로 너무나 잘 알려진 김○○씨는 유병언씨가 머물던 금수원에서 불과 1km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자로서 유병언 도피 핵심 도우미이자 지금은 도피총책으로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마을로 이사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개인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는 유병언이 도피하자 뒤따라 아들 2명과 함께 도피를 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은 수배 전단지에서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 말이다. 못생긴 여자가 사고친다는 말이 유병언의 도피사건으로 실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을 괴롭히는 못생긴 여자 김엄마 김○○ 얼굴을 보면 한 성깔을 하는 표독한 맹종도피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김○○(여, 59세)

표독한 맹종 도피자 모습으로 자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낙으로 하는 못생긴 (여) 김엄마 김○○의 공개수배 사진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의 홈페이지 전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볼드체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같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도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김○○씨(속칭 김엄마)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15일자 전국면 초기화면에「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라는 제목으로 정○○ 목사의 대답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 마을로 이사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개인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서 엄마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총책 역할을 한 사실 역시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 국제뉴스 - 『김○○씨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부산면)
- 내 용 - 국제뉴스는 지난 7월 15일자 본지 전국(부산)면을 통해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의 얼굴, 유병언씨 맹종 도피자”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부산에서 작성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목사의 대답을 통해서 “김○○ 씨는 지난 2007년 금수원 인근 마을로 이사를 와 살고 있었는데 유씨의 따까리로 생활하면서 ○○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독교침례회(구원파)에서 ○○회를 이끈 사실이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총책 역할을 한 사실 역시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0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 례 24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54 손해청구
신 청 인 남○○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부들이 이른바 ‘명절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보상 구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명절과 무관한 시기에 백화점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 때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마치 명절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비춰져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확인절차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1,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MBN -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몰린 주부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경제면)

■ 내 용

- ▷ 앵커 : 명절이 지나면 선물을 대부분 끝냈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받은 주부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거 백화점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입니다.
- ▷ 기자 : 추석 이후 이른바 ‘명절증후군’을 풀려고 주부들이 백화점으로 몰리면서 매출도 덩달아 크게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추석 다음 날 본점 방문 고객은 평일보다 20% 많았고, 매출도 지난해 같은 날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설 명절 이후 일주일간 신세계 백화점 전체 매출에서 40~50대 여성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했습니다.

명절 이후 주부들의 이른바 ‘보상 소비’는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부들을 백화점으로 이끄는 일등공신은 명절 선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상품권 가운데 30% 정도는 명절 직후 한 달 동안 사용됩니다.

여기에 긴 5일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백화점 매출은 최근 3년 명절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MBN뉴스 김○○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년 10월 29일(수)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쇼핑에 대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2014. 9. 11.자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몰린 주부들」 제하의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초상을 방송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0.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❶ 사 례 25

지역의 한 축제 현장을 보도하면서, 행사장을 방문한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대구조정63 손배청구
신 청 인	오○○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4. 10.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장마기간임에도 많은 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행사장 내 한 치킨업체가 주최한 시식행사장에서 치킨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현장 스케치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신청인들은 동의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뉴시스대구경북 - 『대구 치맥페스티벌 “장마전선에도 이상 無”』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17일자 지역면)
- 내 용 -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스시스】강의구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제2회 '치맥페스티벌'에서 한 치킨업체가 마련한 시식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4.07.16. kang29@newsis.com 2014-07-16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2014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막이 올랐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인 16일에는 주최 측 추산 8만여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지난해 1회 행사 때 첫날에 6만여명이 찾은 것보다 2만여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치맥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 기간에 지난해(30만명)보다 20만명 더 많은 50만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수는 '날씨'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는 19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20~60mm의 비(강수확률 60~70%)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비 소식에도 조직위원회 측은 축제 흥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마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다.

행사는 야외에서 열리지만 각 치킨 업체마다 천막으로 된 부스를 차려 시민들이 비를 맞지 않고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일 밤 인기가수 공연 및 DJ와 함께하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파티, 락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메인 무대 앞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축제 도중 비가 내릴 경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우의를 나눠줄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폭우로 발목까지 물이 차지 않는 이상 축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지난해처럼 날씨가 무덥지 않고 시원해 치맥을 즐기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신청인들에게 각각 4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뉴시스대구경북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사진을 2014. 11. 15까지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 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10. 3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 사 례 26

신청인들이 개최한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를 무단 촬영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강원조정9·1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대 외 3인
피신청인	원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원주MBC-TV)
중 재 부	강원중재부
접 수 일	2014. 11.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대학교가 총장 퇴진운동을 이유로 총학생회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회의실에 몰려가 향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비공개로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 모습을 1초간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인 신청인들은 사전에 촬영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의장 내부 및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관련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원회 회의 모습 및 위원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징계업무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정보도 및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공인보도로서 위법성은 없어보인다고 실시한 후 다만, 취재방식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배척된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 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들의 화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원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 내 용

- ▷ 앵커 : ○○대 총장 선임을 두고 시작된 학내갈등이 3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퇴진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학생과 교수들은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대가 김○○ 총장 퇴진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교무회의 난입과 기물파괴가 이릅니다.



- ▷ 기자 : 총학생회장의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곳에는 학생들 100여명이 몰려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지학원 이사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 ▷ 학생 :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이다”

- ▷ 기자 : 학교 측이 총장 퇴진운동에 나선 교수와 학생들에게 징계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상지대의 학내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 ▷ 기자 :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총장선임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불법사찰해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직접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총장 부자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사과보도문을 원주MBC-TV 뉴스데스크(20시 30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관련 사과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4년 11월 5일 뉴스데스크 원주 프로그램에서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학내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징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무단 침입하여 촬영한 장면을 방송하여 ○○대학교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징계위원들의 초상이 누구인지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또한 본 건 합의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2014. 1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홈페이지 다시보기 중 신청인들 영상 삭제

